

#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6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11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### 1. 개정이유
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22. 6.22.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기능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을 “22명” 에서 “18명 이내” 로 변경 (안 제6조)
- 나.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을 “13명” 에서 “14명 이내” 로 변경(안 제6조)
- 다.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을 “11명” 에서 “12명” 으로 변경 (안 제6조)

#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# 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### 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# 6. 예산수반 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)

## **7. 입법예고 결과**

가. 예고기간 : 2022. 10. 21. ~ 2022. 11. 10.(2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 없음

## 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 영향평가 : 의견 없음

다. 부패 영향평가 : 의견 없음

## **9. 참고사항 : 덧붙임**

- 사회복지관 인력기준

## 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**

#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「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 중 “제34조제4항” 을 “제34조제5항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기여” 를 “이바지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탁 받” 을 “수탁받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의한” 을 “따른” 으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복지정책과장 조대근
	팀장 직위 · 성명	복지기획팀장 곽정란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지용원 (031-790-5806)

[별표 2]

사회복지관 인력기준(제6조 관련)

명 칭	인력기준	비 고
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	18명 이내	
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	14명 이내	
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	12명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 등) ①  사회복지관은 하남시장(이하 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·운영  한다. 다만,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 필요한 경우 「사회복지사업  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 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 등) ①  -----  -----.  -----  -----  -----  - 제34조제5항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-----  -----  -----  ----- 이바지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수  탁받-----  ----- 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 따른 -----  -----.</p>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운영비의 보조)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인력기준 1명 충원
-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인력기준 1명 충원

## 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에 따른 2명 충원 시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총 소요액	0	60	62	64	66
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	0	30	31	32	33
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	0	30	31	32	33

※ 2023년 기준 1인당 30,000천원 추가 소요, 매년 약 3%씩 증가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## 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: 없음

## 4. 작성자 :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장 조 대 근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구분		2022	2023	2024	2025	2026	계
세입							
세출		0	60,000	61,800	63,654	65,562	251,016
하남시미사강변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(민간위탁)		0	30,000	30,900	31,827	32,781	125,508
하남감일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(민간위탁)		0	30,000	30,900	31,827	32,781	125,508
재원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계	0	60,000	61,800	63,654	65,562	251,016
	지방세	0	60,000	61,800	63,654	65,562	251,016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금							
공기업특별회계							
기타(채무부담, 민자등)							

## < 인건비 산출 내역 >

**별표 1. 2022년 사회복지시설(생활시설, 이용시설)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**

(단위: 원/월)

직위 (호봉)	생활시설	원장	-	사무국장	과장, 생활복지사	선임 생활지도원	생활지도원	-	관리직	기능직
	(사회,노인) 이용시설_사회복지직	관장	-	부장	과장	선임사회복지사	사회복지사	-	-	-
	(장애인)이용시설_일반직	관장	사무국장	1급	2급	3급	4급	5급	-	-
1호봉		2,650,500	2,497,600	2,376,500	2,189,800	2,082,200	1,989,200	1,950,300	1,936,200	1,914,500
2호봉		2,746,300	2,584,500	2,458,000	2,248,500	2,136,000	2,020,600	2,000,900	1,974,800	1,937,600
3호봉		2,850,700	2,682,900	2,552,600	2,312,800	2,200,900	2,065,600	2,042,600	2,017,800	1,975,500

- 산출내역 : 연봉(25,208천원) + 명절수당(2,520천원) + 기타인건비(4대 보험, 퇴직적립금) 등 약 **30,000천원 이내**
- 세부내역 :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보수 지급.  
2023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증가율(잠정) 1.7% 인상
  - ※ 경기도 복지정책과-16979(2022.09.05.)
  - ※ 증원 및 충원되는 직원은 사회복지사 4급 1호봉~3호봉 채용(남자 사회복지사 채용 시 군경력 인정으로 인한 3호봉까지 채용)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1 「사회복지사법」

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18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>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[제목개정 2011. 8. 4.]

제23조의2(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)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,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 <개정 2012. 8. 3., 2022. 6. 22.>

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>

1. 관장 :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인정한 자
2. 사무분야의 책임자 :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
3.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: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

③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와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8. 3.>

④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,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⑤ 삭제 <2012. 8. 3.>

⑥ 삭제 <2012. 8. 3.>

⑦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3., 2008. 11. 5., 2010. 3. 19.>

[본조신설 2004. 9. 6.]

[제22조에서 이동 <2012. 8. 3.>]

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3의2] <신설 2022. 6. 22.>

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(제23조의2제1항 관련)

위치	특별시	광역시	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
사회복지관의 직원 수	19명 이상	13명 이상	12명 이상

비고: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를 위 표에 규정된 직원 수보다 많게 정할 수 있다.

## 참고 : 사회복지관 인력기준

※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3항 개정(2021.12.21. 공포, 2022.6.22. 시행)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을 개정(보건복지부령 제889호, 2022.6.22. 시행)하고,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내용을 수정함

### 가. 목적

- 사회복지관의 기능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기준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### 나. 적용 대상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

### 다. 적용 원칙

-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1월 1일까지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, 새로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본 기준에 맞추어 설치해야 함
- 사회복지관의 인력기준은 최소 인력기준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를 많게 정할 수 있음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(2022. 6.22. 시행) 이전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력기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향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
- 사회복지관의 기능별 인력기준 권고안은 사회복지관의 기능별 최소 인력기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기능의 수행여부 및 지역복지수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인력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
- (특례 사항) 시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,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등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인력(3명)을 우선적으로 증원할 수 있음

### 라. 인력 기준

위치	특별시	광역시	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
사회복지관의 직원 수	19명 이상	13명 이상	12명 이상

마. 기능별 인력기준 권고안

기능		사업분야	특별시	광역시	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
사례관리	기존	사례발굴, 사례개입, 서비스연계	5명 이상	3명 이상	3명 이상
	특례		8명 이상	6명 이상	6명 이상
서비스제공		가족기능강화, 지역사회 보호, 교육문화, 자활지원 등	5명 이상	4명 이상	4명 이상
지역조직화		복지네트워크 구축, 주민 조직화, 자원개발 및 관리	3명 이상	2명 이상	2명 이상
행정 및 관리		관장, 부장/총무, 경리/서무, 시설안전	6명 이상	4명 이상	3명 이상
계		기존	19명 이상	13명 이상	12명 이상
		특례	22명 이상	16명 이상	15명 이상